

##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전학처분취소 청구 소송

<b>소송종류</b>	행정소송	<b>법원명</b>	인천지방법원
<b>사건번호</b>	2020구합○○○○○ [1심]	<b>사건유형</b>	학교폭력
<b>원고</b>	○○○	<b>피고</b>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<b>판결선고일</b>	[1심]2021. 7. 22. 원고패	<b>비고</b>	
<b>사건개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고는 ○○○고등학교 학생으로 피해△△△학생의 동의 내지 허락없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해학생의 사진 및 개인정보와 피해학생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송함.</li> <li>○ 해당 사안에 대해 ◇◇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정지 15 등을 처분하였음. 원고와 피해학생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고, 피고는 원고의 ‘출석정지 15일 등 처분 취소’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, 피해학생의 ‘가해학생 처분 가중 변경’ 청구에 대해 인용하여 전학처분으로 재결하였음.</li> <li>○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전학처분은 위법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함.</li> </ul>		
<b>주 문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</li> <li>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li> </ol>		
<b>판결이유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피해학생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 등으로 상당기간 등교를 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음.</li> <li>○ 이 사건 재결처분 당시 학교폭력의 심각성, 피해학생의 피해정도,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피고의 재결처분이 부당하지 않음.</li> <li>○ 학교폭력예방방법상의 각종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, 교육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과의 합의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재결처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음.</li> <li>○ 원고의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재결처분이 있는 후이므로 재결처분의 위법 판단 여부에 관한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없음.</li> </ul>		